

## 2025년 표준공장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무역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표준공장에 새롭게 입주할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상담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 표준공장 개요

#### ○ (입주대상) 표준공장 경공업동 A동, C동

입주대상		면적	층고	임대료(VAT별도)
A동	3층	2,762.14m <sup>2</sup>	4.5m	150만원(543원/m <sup>2</sup> )
	1층	2,249.23m <sup>2</sup>	5m	122만원(543원/m <sup>2</sup> )
C동	2층	2,294.52m <sup>2</sup>	4.5m	118만원(516원/m <sup>2</sup> )
	1층	2,249.23m <sup>2</sup>	5m	116만원(516원/m <sup>2</sup> )

\* (표준공장) 제조시설·장비 등만 갖추면 즉시 생산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 (면 적) 전용과 공용을 합한 면적으로, 최소 소요면적은 1개 층

\* (임 대 료)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46호(‘24.12.30.)」에 의거 ‘26.12.31.까지 적용하며 이후 임대료는 별도 공고

\* (기 타) 임대료 외 매월 공동부담금(8.01원/m<sup>2</sup>) 부과 및 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보증금(6개월분 임대료+공동부담금) 납부

#### ○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 ○ (입주기간) 50년 이내(연장 가능)

\* 임대료 등 체납이 없고 공장 정상 가동 시 10년 주기로 임대계약 갱신

\* 입주기간 동안 입주자격 유지必, 상실 시 임대료 상승 및 시정명령 기간 후 입주계약 해지

○ (시설현황)

입주대상		전기용량	바닥하중	화물용 승강기
A동	1층, 3층	(1층)75kW, (3층)85kW	600kgf/m <sup>2</sup>	3m(W)×4.4m(D)×2.2m(H) 적재하중 4톤
C동	1층, 2층	109kW		

\* (전기용량) 사전협의 후 증설 가능(수요자 부담, 전기사용산출내역 제출), 저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수요자 부담 및 기 사용 중인 입주기업과 협의 후 공동사용

\* (보수지원) 최초 1년간 소모성 부품은 관리원에서 보수, 이후 수요자 직접 보수

□ 입주 자격

○ **수출 주목적 기업**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① **(제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대기업), 40%(중견), 3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단,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서비스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인 경우 수출비중은 30%(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

② **(국내복귀 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 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 (대기업, 중견), 20%(중소)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③ **(지식서비스산업)**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①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며, ②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①, ② 모두 충족)

\* 외투 신설법인은 수출비중 미적용. 단,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이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충족하는 기업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 불가**

## □ 입주제한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을 해하는(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 □ 입주 시 혜택

### 【외국인투자 혜택】

-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2 제1항에 의거 해당업체 감면 가능

- 외국인투자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100%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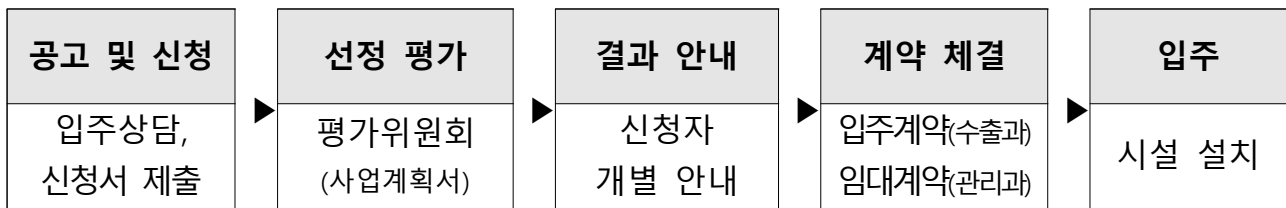
\* 기타 임대료 감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46호 참조

- (조세 감면) 지방세(취득·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 【입주 후 혜택】

- (관세특례)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 (부가세 영세율)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 (역외작업 허용)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

## □ 입주계약 절차



\* 입주는 모집기간 종료 후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입주·임대 계약 체결 불가**

### 가. 입주 신청

- (모집기간) 2025. 9. 30.(화) 18:00까지
- (문의처)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입주상담) 입주자격 유무(외국인투자, 수출주목적 기업 등) 및 적정 임대 공간, 업종, 투자시설, 사업성, 환경 등 검토
- (신청서류)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
  - ※ 서류 작성 시 사전 상담 후 신청 권장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TEL) 061-464-0746~7 (FAX) 061-464-0751

(주소) 5845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3층 수출산업과

(홈페이지) [www.motie.go.kr/ftz/daebul](http://www.motie.go.kr/ftz/daebul)

### 나. 평가위원회 개최

- (심사일자) 모집기간 종료 후
- (위원구성)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외부위원 1/2 이상)
-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등 서류 평가(필요시 내용 발표 및 현장 방문)
- (평가기준) 수출·매출, 사업수행 역량, 적격성 및 기대효과 등
- (평가결과) 평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통보, 단,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연번	내용	비고
1	입주수요신청서 1부 * 입주희망 위치 및 면적 표시 필수	별첨1 양식
2	사업계획서 1부 * 시설배치계획, 자본조달계획, 수출계획 등 구체적 기술	별첨2 양식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매출 증빙 서류	1년 이내
4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고용 증빙 서류	1개월 이내
5	역내 입주기업 지원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1개월 이내
8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등기이사 인적사항 및 결격사유 확인 시 사용)	별첨3 양식
9	인감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10	평가 및 입주에 필요한 서류 (기술관련 인증, 수출거래계약서, 지역 한정 산업 증빙서류 등)	해당 시
11	특허증명서, 신용평가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각 1부	해당 시
12	재무제표 1부	국세청발급 분
13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증명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14	외국인투자증명서 1부	해당 시
15	창업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KITA 발행)', 구매확인서(KTNET 발행) 등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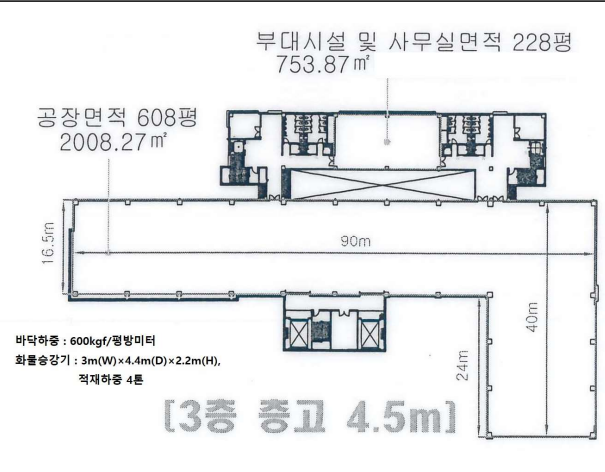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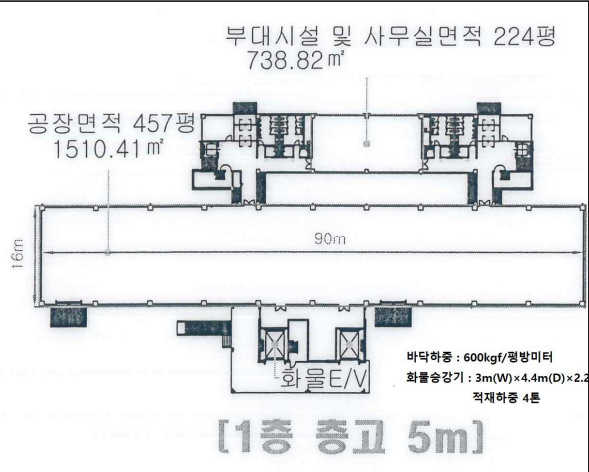
**참고1**

**표준공장 A동 사진 및 도면**

외부



내부



**참고1**

**표준공장 C동 사진 및 도면**

외부



내부

